

고시

기안자	이준영	전화번호	213	공보	필	요	불필요
지방	소외계장	도시	파장	산업	국장	재/부	시/장
협조자	4.29	5.12	5.25	5.25	보	존	년
서명	백지계장	백지계장	백지계장	백지계장	백지계장	백지계장	백지계장
기년	월	일	년	월	일	정서	기장
분류기호	112.2-0370						
경수	유산	각안참조		발신			
제	목	도시제 991 호					
제 1 단 내 부 설 재							
<p>경남도 산단 2900-1 번의 입선 재로 부속 산단 산단 87-124 란이 대한 지방 자립의 해리 신청이 있어 해리 조사함바.</p> <p>1. 본산장은 1957년도에 지방 자립으로 자립되어 1959~1960년도에 파중 사업을 실행한 지방 자립지이다. 일부 지역이 석중이 성립되어와서 해리 신청은 없음.</p> <p>2. 신청 부속은 해리 조성이바 시가리 계획상 누락 리 역으로 입선 해리를 조성이 품의 조성이도 더욱 효과적 이다.</p> <p>3. 해리를 조성이므로 부대 사업은 해리됨으로 도 산단 87-124</p>							

부시
장
결
사
정
향

법
제
525

합제



추출의 외해는 없을 것이며

제1호

수익의 입자적인 조건을 감안하여 계속 지장지로
손해하기 보다 선형 이외의 타당도인 택지로 이용함이 도시
발전상 효과가 클것이므로 아체와 같이 지방 지장지를 해리
처리하기 합당하다

해리 처리 청 0.2719

제2안

고 시 분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 **고시제 991 호**

지방 사업법 제20조의 처징이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방 지장지를 해리 고시한다.

1966.5.25

시 1966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우

1. 해리의

명 다 조 처리		지분		지적		지장		해리		조 주 각		비고
구	중	지분	지적	지장	지장	지장	지장	지장	지장	지장	지장	
상부	중부	상부	중부	상부	중부	상부	중부	상부	중부	상부	중부	
상부	중부	상부	중부	상부	중부	상부	중부	상부	중부	상부	중부	

2. 해리 사유

불입자는 1957년도이 지방 지장지로 지장되어 1959
~ 1960년도이 지방 사업을 본 지방 지장지로 도시 계획상 입간
택지로 이용함이 불체 무지 이도 효과가 클것이므로 선형 이외의
타당도인 이용이 부당이 하여 해리 함.

제3안

수신 영등하 신남동 2/10-1번 발신 시강

임신재

제부 수방 지장의 하위 등리

키가 저출한 수방 지장의 하위 신장의 내하역은

별칭 고시본 수본과 같이 하위 하역기 별칭입니다

우첨 1. 고시본 수본 1부

2. 하위 하역기 1부

제후안

수신 등리부 장관

발신 시강

참조 신장부 조립부

제부 수방 지장의 하위

별칭 고시본 수본과 같이 하위 하역기 관제 시추 첨부하여

보고합니다

우첨 1. 고시본 수본 1부

2. 수방 지장의 하위 하역기 및 하역기 각 1부

3. 수방 지장의 하위 하역기 및 수인 각 1부

제후안

수신 수신처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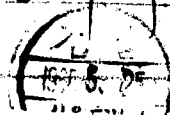
발신 시강

제부 수방 지장의 하위 등리

별칭 고시본 수본과 같이 하위 하역기 등리장

우첨 1. 고시본 수본 및 하위 하역기 1부

제후안



수신 공보실장

발신 산림국장

제목 사방지각의 하위 고시의회

별첨부 편이 고시의회에 시방의 제정하의 수시기

바람따

우첨 고시원 수본 1부



수행 가강리 하리 조서

수행리			가강리			하리			조서		
구분	종류	지번	지번	지번	지번	지번	지번	지번	지번	지번	지번
소	경	97924	0224	0224	0224	0224	0224	0224	0224	0224	0224

수방 기록지 해리형식

조각리			기록지			해리형식		수표부과		비고
구	도	지번	리	지정	해리	보부공	수감	주소	상	
수	경	09741	11	HA	HA			수	상	
방	00	09741	11	HA	HA			24	상	